# 종합사회복지관 운영

## 1 기본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		
사업내용	○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, 운영비, 무료사업비 등 지원			
사업비	91,036,937천원 (국비)	[시비]91,036,937천원		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(기타)		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지역독봄복지과	박동석	김민주	고소영
국시장색결	시작들음숙시과	2133-7370	2133-7387	2133-7338

<sup>※</sup>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 산 설 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
1 2	2010에만 ㅋ (11)	2013에만 가 (D)	8 H (D II)	(B-A)*100/A
계	(x-)	(x-)	(x-)	(x-)
	89,098,774	91,036,937	1,938,163	2
시책추진업무추진	(x-)	(x-)	(x-)	(x-)
비	33,200	33,200	0	0
민간경상사업보조	(x-)	(x-)	(x-)	(x-)
	40,000	40,000	0	0
민간위탁금	(x-)	(x <sup>-</sup> )	(x-)	(x-)
	1,100,880	1,120,600	19,720	1
자치단체경상보조	(x-)	(x-)	(x-)	(x-)
금	87,924,694	89,843,137	1,918,443	2

#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	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사회복지 주요업무추진 33,200,000원	=	33,200천원	
민간경상사업보조	○ 종사자 교육비 40,000,000원	=	40,000천원	
	○ 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 45,182,000원*19명	=	858,458천원	
	○ 사회복지관 운영비 125,000,000원	=	125,000천원	
	○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360,000원*5명	=	1,800천원	
민간위탁금	○ 복지포인트 4,460,000원	=	4,460천원	
	○ 기능특화운영비 40,000,000원	=	40,000천원	
	○ 이동목욕사업 75,882,000원	=	75,882천원	
	○ 시설개방지원 15,000,000원	=	15,000천원	
	○ 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	=	75,973,780천원	
	- 임대아파트내 사회복지관(30개소) 25,753,740,000원	=	25,753,740천원	
	- 구립,법인직영 사회복지관(65개소) 50,220,040,000원	=	50,220,040천원	
	○ 사회복지관 운영비	=	9,470,304천원	
	- 임대아파트 내(30개소) 3,200,904,000원	=	3,200,904천원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- 구립, 법인직영(65개소) 6,269,400,000원	=	6,269,400천원	
	○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360,000원*3명*95개소	=	102,600천원	
	○ 종사자 복지포인트 423,700,000원	=	423,700천원	
	○ 사회복지관 특별지원금(중림, 유락) 120,000,000원	=	120,000천원	
	○ 상담소(2개소)	=	186,995천원	
	186,995,000원 ○ 기능특화운영비 40,000,000원*24개소	=	960,000천원	

과목구분	2	2019년 예산내역		
	○ 이동목욕사업 75,882,000원*19개소		=	1,441,758천원
	○ 시설개방지원 12,000,000원*97개소		=	1,164,000천원

### 3 사업설명

#### □ 사업목적

-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,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
-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

#### □ 사업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(보조금 등) 및 51조(지도 감독 등)
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#### 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
  - 종합사회복지관 : 98개소
  - 지원인력 : 총 1,824명 (개소당 평균 19명)
  - 이용인원 : 연평균 17,616,517명(개소당 연평균 179,760명)
- 사업기간 : 2019. 1 ~ 12월
- 보조율
  - 시립 및 영구임대(SH. LH) : 시비 100%
  - 구립 및 법인 : 시비 90%, 구비 10% (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 및 운영비에 한하며, 기타 보조금은 전액 시비)
- '19년도 소요예산 : 91,036,937천원
- 사업내용
  - 1. 시책추진업무추진비 : 33,200천원
  - 2. 민간경상사업보조 : 40.000천원
    - · 사업내용 :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
    - · 지원대상 :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
    - · 산출단가 : (25,000원\*1,200명)+(50,000원\*200명)
  - 3. 민간위탁금 : 1,120,600천원(시립복지관 1개소, 전액시비)
  - 3-1. 종사자 기본인건비

- · 대상 : 시립복지관(1개소) 종사자 19명
- · 내용 : 기본급, 제수당, 4대보험, 퇴직적립금 등
- · 단가 : 4급8호봉(평균호봉) 45,182천원
- · 기준 : 19명(사회복지사 등 18명, 안전관리인 1명)
- 소요예산 : 858.458천원
- 3-2. 사회복지관 운영비
  - · 내용 : 직·간접 운영비, 시설장비유지비, 무료사업비 등
  - · 기준 : 시설 면적별 5단계 차등지원
  - 소요예산 : 125,000천원
- 3-3. 비정규직 처우개선비
  - · 대상 : 복지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
  - · 기준 : 1인 월 30천원, 5명
  - · 소요예산 : 1.800천원
- 3-4.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
  - · 대상 : 시립복지관(1개소) 종사자 19명
  - · 단가 : 10호봉 미만 200천원, 10호봉 이상 260천원
  - · 소요예산 : 4.460천원
- 3-5. 기능특화운영비
  - · 내용 : 노인·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% 이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
  - 소요예산 :40,000천원
- 3-6. 이동목욕사업비
  - · 운영인력 : 2명(1인당 지원단가 37.941천원)
  - · 소요예산 : 75.882천원
- 3-7. 시설개방지원
  - · 내용 : 주말, 휴일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근무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
  - · 소요예산 : 15.000천원
- 4. 자치단체 경상보조금
- 4-1. 종사자 기본인건비
  - · 대상 : 사회복지관(95개소) 종사자 총1,805명
  - · 내용 : 기본급. 제수당. 4대보험. 퇴직적립금 등
  - · 단가 : 4급8호봉(평균호봉) 45.182천원
  - · 기준 : 개소당 19명(사회복지사 등 18명, 안전관리인 1명)
  - 소요예산 : 75,973,780천원
- 4-2. 사회복지관 운영비
  - · 대상 : 종합사회복지관(95개소)

- · 내용 : 직·간접 운영비, 시설장비유지비, 무료사업비 등
- · 기준 : 시설 면적별 5단계 차등지원(단계별 7백만원, 95백만원 ~ 123백만원)
- · 소요예산 : 9,470,304천원
- 4-3. 비정규직 처우개선비
  - · 대상 : 종합사회복지관(95개소)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
  - · 기준 : 1인 월 30천원, 시설별 3명
  - 소요예산 : 102.600천원
- 4-4.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
  - · 대상 : 종합사회복지관(95개소) 종사자 총 1.805명
  - · 단가 : 10호봉 미만 200천원, 10호봉 이상 260천원
  - · 기준 : 19명(사회복지사 등 18명, 안전관리인 1명)
  - · 소요예산 : 423.700천원
- 4-5. 사회복지관 특별지원
  - · 대상 : 2개소(중구 유락, 중림)
  - · 내용 : 보조금 미지원되는 2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
  - · 소요예산 : 120,000천원
- 4-6. 상담소
  - · 대상 : 2개소(생명의전화상담소, 사랑의전화상담소)
  - · 내용 : 위기에 처한 시민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(전화, 사이버, 자살위기 개입 등)
  - · 운영인력 : 총 5명(생명의전화상담소 3, 사랑의 전화상담소 2)
  - · 소요예산 :186,995천원
- 4-7. 기능특화운영비
  - · 대상 : 기능특화복지관 24개소(노인특화 22, 장애인특화 2) ('00년~)
  - · 내용 : 노인·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% 이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
  - 소요예산 : 960.000천원
- 4-8. 이동목욕사업비
  - · 대상 : 이동목욕사업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('97년~ )
  - · 운영인력 : 복지관별 2명(1인당 지원단가 37.941천원)
  - 소요예산 : 1.441.758천원
- 4-9. 시설 개방 지원
  - · 대상 : 평일 야간 및 토·일요일 주민 대상 시설 개방 종합사회복지관 97개소

· 내용 : 근무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(개소당 10,000천원 ~ 15.000천원)

· 소요예산 : 1,640,000천원

#### □ 추진경위

○ '16년 ~ '17년: 보건복지부 최소인력배치기준 권고안('15.6.12),

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및 운영지원 개선(안)

- 인건비 : 기본인력제 및 정년제 시행 (안전관리인 1명 포함)
  - · 직급별, 직능별 인력기준 마런 및 기본인력 17명 지원 → '17.9월부터 19명 지원
  - · 안전관리인 호봉제 실시
  - · 정년제 의무 이행 (종사자 60세, 시설장 65세)
- 운영비 : 시설 면적별 5단계 차등 지급 (등급간 7백만원, 95백만원 ~ 123백만원)

(단위 : 천원)

#### □ 2019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91,036,937	
기본계획 수립	2019.01~2019.01	0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19.01~2019.12	91,036,937	분기별 신청 및 교부
보조금 집행 정산	2019.11~2020.01	0	

## 4 사업효과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<ul> <li>○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4개소</li> <li>○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4개소</li> <li>○ 이동목욕사업지원 : 20개소</li> <li>○ 상담소 지원 : 2개소</li> <li>○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6개소</li> <li>○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: 29개소</li> <li>○ 사회복지시설개방사업비 지원 : 52개소</li> </ul>
--------	---

	○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4개소 ○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5개소
2017년도	<ul> <li>○ 이동목욕사업지원 : 20개소</li> <li>○ 상담소 지원 : 2개소</li> <li>○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5개소</li> <li>○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지원 : 13개소</li> <li>○ 사회복지시설개방사업비 지원 : 77개소</li> </ul>
2018년도	<ul> <li>○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6개소</li> <li>○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2개소</li> <li>○ 이동목욕사업지원 : 20개소</li> <li>○ 상담소 지원 : 2개소</li> <li>○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5개소</li> <li>○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지원 : 8개소</li> <li>○ 사회복지시설개방사업비 지원 : 84개소</li> </ul>

### □ 향후 기대효과

-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시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
- 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을 통한 복지관 만족도 증대

##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-) 69,603,648	(x-) 0	(x-) -300,000	(x-) 69,303,648	(x-) 68,293,151	( <sub>X</sub> -)	(x-) 1,010,497
2016	(x-) 73,874,030	(x-) 0	(x-) 0	(x-) 73,874,030	(x-) 73,754,254	( <sub>X</sub> -)	(x-) 119,776
2017	(x-) 80,722,366	(x-)	(x-)	(x-) 80,722,366	(x-) 80,193,364	(x-)	( <sub>X</sub> -) 529,002